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각 기관 업무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인사운영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시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

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특정 사유의 휴직 또는 휴가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이외에 재난 대

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 신설

다. 필수보직기간 적용 유연화 (안 제45조제2항 및 제8항)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하는 경우 필요한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소속 장관이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도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국(局)내 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최소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3호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 이내까지 확대 적용

마. 인사운영위원회의 통·폐합(안 제10조의4, 제14조, 제23조, 제34조의3, 제57조의6, 제57조의7 등)

고용휴직 관련 심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고용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보 공무원의 정규임용·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수습직원 임용·별정직공무원 면직·전문경력관 임용, 휴직 등과 관

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하며, 승진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들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일원화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
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
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
무원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함

사.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제42
조제4항, 별표4의2 등)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1회 또는 연 2회로 확대
하고, 전문경력관의 공로연수 파견 시 결원보충 방식을 각 기관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보완하고 그 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41조의2”를 “제41조의2, 제4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제6조·제7조·제9조”를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의4”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0조의4 및”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임용·면직 등 심사) ①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채용 후보자에 대한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2. 법 제3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가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직무

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의 자격 취소·수습근무 기간 연장 또는 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4.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5.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6.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7.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

8.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가. 질병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나. 질병휴직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다. 법 제72조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라.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총 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해야 할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제1항제8호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 또는 채용후보자의 임용예정 직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을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로 한다.

제22조의4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

호”를 “「비상대비예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를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4급:”을 “4급 및 5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4년”을 “6급: 2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4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1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보통승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6항 전단 중 “대해”를 “대해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35조의4제5항 중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를 “임용에 있어 연도별로 합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1회 실시”를 “1회 또는 연 2회 실시”로 한다.

제42조제4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병가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43조제7항 중 “지역”을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 등”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2년 이상”을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장관”을 “장관(소속 장관이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조기관·보

좌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가.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 : 2년
이상

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 : 1년
이상

제51조제6항 중 “수 있고,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를 “수”로 한다.

제57조의4제2항 중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의6의 제목 “(연구기관 등에서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를 “(고용휴직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제기구”를 “국제기구(인사혁신처의 예산을 받는 휴직은 제외한다)”로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휴직을 위한 공무원의 선발, 직위의 신설·유지 및 폐지, 그 밖에 법 제71조제2항제1호 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휴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7조의7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질병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를 “등을 포함하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10제2항 중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자기개발휴직”으로 한다.

별표 4의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6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 채용 시 경력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제1조(적용 범위) ①	-----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		-----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	
	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		-----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		-----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		-----	
	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		-----	
	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		-----	
	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		-----	
	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		-----	
	조, <u>제41조의2</u> , 제42조, 제42조	-- <u>제41조의2, 제41조의3</u>	-----	
	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		-----	
	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	
	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		-----	
	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		-----	
	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	

아니한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

-----.

② -----
-----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의4

--. 다만, 제10조의4 및 -----

---.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

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 4. (생략)

③ ~ ⑨ (생략)

<신설>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임용·면직 등 심사)

①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
른 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 추
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
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심
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한
다. 다만, 제8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칠 수 있
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
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
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
직 제청하려는 경우

2. 법 제38조에 따른 채용후보
자가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의 자격
취소·수습근무 기간 연장 또
는 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4.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
직하려는 경우

5.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
로 전보하려는 경우

6.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
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
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
하려는 경우

7.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
라 한다)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

8.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

다)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가. 질병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나. 질병휴직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다. 법 제72조제1호의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라.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해야 할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제1항제8호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반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생략)

②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드시 1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 또는 채용후보자의 임용예정 직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공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
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
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
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어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22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
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
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제23조(시보임용) ① (생략)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제12조의2제1항제2호-----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시보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삭 제>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
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
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
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⑥ ----- 위원회-----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② ~ ⑮ (생략)

<신설>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

1. -----

가. 4급 및 5급: -----

나. 6급: 2년 --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삭제>

<삭제>

2. -----

가. ----- 3년 ---

나. -----
----- 1년 6개월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삭제>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u>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⑤ (생략)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 ----- ----- ----- <u>대해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u>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생략)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⑤ ----- ----- ---- <u>임용에 있어 연도별로 합</u>

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 ⑩ (생략)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③ (생략)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

산하여 -----

⑥ -----

--- 1회 또는 연 2회 실시---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의

전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⑥ (생략)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⑧ (생략)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병가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지역 및 다
자녀 양육 여건 등--.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신 설>

<신 설>

2. (생략)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생략)

③ ~ ⑦ (생략)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

-----.

1. -----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 : 2년 이상

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 : 1년 이상

2. (현행과 같음)

3. -----

----- <후단
삭제>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
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
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
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⑨ ~ ⑬ (생략)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
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
행하는 공무원) ① (생략)

----- 장
관(소속 장관이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또
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 -----
-----.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수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
행하는 공무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신 설>

② -----
----- 사산휴가, 육아휴직
-----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의6(고용휴직위원회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휴직을 위한 공무원의 선발, 직위의 신설·유지 및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폐지, 그 밖에 법 제71조제2항제1호 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휴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 국제기구(인사혁신처의 예산을 받는 휴직은 제외한다)-----

-----.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질병휴직

-----.

② -----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생략)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등을 포함하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

<삭 제>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기개발휴직 -----

-----.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4